



보도 일시	2022. 9. 27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9. 27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물환경정책과	책임자	과장 이상진 (044-201-7001)
		담당자	사무관 최진성 (044-201-7005)

## 환경부-농식품부,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위해 맞손

- 제도개선 위한 첫 회의 개최,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‘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(TF)’을 구성하고, 첫 회의(Kick-off)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개최했다.
- 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,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.
  - \*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·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(공동팀장)을 포함,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
- 이번 첫 회의(Kick-off)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(청양군)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,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-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, 농협, 지자체, 관련 부처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’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(붙임1 참조)했다.

-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,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(붙임2 참조)했다.
- 한편,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,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.
-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.
-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“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”이라며, “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“가축분뇨의 에너지화, 바이오차\*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”라며, “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”라고 밝혔다.

\* 바이오매스와 숯(차콜)의 합성어

- 붙임 1.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방향(환경부).  
 2.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(농식품부).  
 3.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전담조직 회의 사진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물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상진 (044-201-7001)
		담당자	사무관 최진성 (044-201-7005)
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책임자	과 장 정경석 (044-201-2351)
		담당자	서기관 이상준 (044-201-2362)



**1 국가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**

- (국가계획 수립)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“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” 법정화
  - \* 목표 및 추진방향, 가축분뇨 관리 여건,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,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
- (설치계획 반영 의무화)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·증설 시 기본 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관리계획 내실화

**2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**

- (계획과의 연계 강화) 시·군·구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해당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
  - ⇒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 계획 수립
- (후속조치 권고)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경우\*,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
  - \* 퇴·액비의 공급량이 농경지 등에서의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

**3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**

- (시스템 연계 강화)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 예방하고, 액비살포 전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 시스템\* 간 연계 체계 구축
  - \* (환경부) 전자인계관리시스템, (농식품부) AgriX, (농진청) 흙토람, (지자체) 새울시스템 등
- (바이오가스 확대) 퇴·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\*, 관련 법령 제정\*\* 등 추진
  - \*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4개소 추진 중('22년)
  - \*\*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, 거래·판매 인증제 도입, 생산촉진 기술·재정 지원 등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「바이오가스 촉진법」 제정

**① 新기술 도입 · 新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**

- ① 바이오차,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

\* (예) 가축분뇨법 내 바이오차 등 용어 정의, 처리시설 설치기준(최소용량 등) 마련

**②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 지원**

- ①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, 바이오가스,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합리화 추진

\* (예) 분뇨처리업자가 전문업체에 관리운영 위탁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요건 완화

- ② 퇴액비화 여건 악화,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,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 재정비

\* (예) 처리규모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신설 검토, 동일한 농가가 두 개 이상 사업장 운영시 가축분뇨 공동 정화처리(농장간 가축분뇨 이송) 허용

**③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**

- ①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화

\* (예) 충분한 액비 살포지 확보 등으로 연중 액비 살포 가능시 액비 저장용량 기준 완화

- ② 일선 농가 및 대행업체가 액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 규제 합리화

\* (예) 액비 수거살포 대행업체 등이 타 농가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서도 살포 가능하도록 개선

**④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**

- ①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합리화를 통해 경영부담 완화

\* (예) 개별농가에서는 분뇨를 매일 처리하지 않으므로 퇴액비 관리 대장의 매일 기록 의무 현실화 필요

